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79
----------	-------

발의연월일 : 2026. 9. 23.

발 의 자 : 박 정 · 김성희 · 허 영
한준호 · 소병훈 · 차지호
이기현 · 박지혜 · 김주영
김성원 · 박상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세는 지원되는 반면 지방세는 지원되지 않아 평화경제특구 투자유치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평화경제특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발전특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개발 투자유치 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음.

이에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

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7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7(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감면) 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해당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시행자가 평화경제특구를 개발·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평화경제특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 또는 증설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

립한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⑦ 감면대상 사업의 범위, 창업·사업장의 신설·이전·증설 기준, 감면대상 부동산 및 직접 사용의 범위, 감면대상 부분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5조의7(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감면) 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해당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u> <u>② 제1항의 개발사업시행자가 평화경제특구를 개발·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u> <u>③ 평화경제특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u>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 또는 증설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⑦ 감면대상 사업의 범위, 창업·사업장의 신설·이전·증설 기준, 감면대상 부동산 및 직접

	<u>사용의 범위, 감면대상 부분의</u> <u>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u> <u>령으로 정한다.</u>
--	---